

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요강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대학’

## 수원과학대학교의 교육목적 체계

<b>교육이념</b>	<b>인격함양 · 국가발전 · 인류번영</b> 검소, 정의, 창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를 선도하며 민족의 긍지를 선양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번영에 이바지 한다.
<b>교훈</b>	<b>검소 · 정의 · 창의</b>
<b>교육목적</b>	<b>도덕적 인격인 · 자율적 지성인 · 진취적인 전문인</b> 1.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로 알고, 청렴하고 근면하며 봉사하는 도덕적 인격인 양성 2.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양심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율적 지성인 양성 3. 지식, 정보와 기술을 창조하고 개척과 능률을 숭상하며 국가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진취적 전문인 양성
<b>교육목표</b>	<b>자아계발 문화시민 자질함양 미래사회 선도능력 배양 국가·사회 봉사</b>
<b>교육목표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b>	<b>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양교육 강화 실기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강화</b>

## 산업체 위탁교육 의의 및 목적

(의의) 산업체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목적)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재직자에게 서류 전형으로 입학 자격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산업체위탁교육이 가진 목적이다.

##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2020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교육부)

### 1. 모집 학과 및 모집인원

수업연한	모집 학과	주/야 구분	모집 인원	교육 장소	비고
2년제	자동차과	야간	30	본교	※ 본교에서는 외부 위탁 교육장을 운영하지 않음.
	전기과	야간	30	본교	
	산업경영과	야간	30	본교	
	호텔관광서비스과	야간	30	본교	
	호텔조리제과제빵과	야간	30	본교	
	사회복지과	야간	60	본교	

※ 별도 학급이 편성 안 될 경우 개설되지 않음.

### 2. 전형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9년 12월 9일(월) ~ 2020년 1월 23일(목)	본교 교무과(본관 1층 102호) ※ 우편 원서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접수 안함.
합격자 발표	2020년 2월 3일(월) 10:00	본교 입시 홈페이지 개인별 확인(개인별 통지·발송 안함)
합격자 등록	2020년 2월 6일(목) 09:00 ~ 2020년 2월 10일(월) 16:00 까지	본교에서 개인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신한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타은행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기 등을 이용한 입금)
예비순위 총원 및 추가 모집	2020년 2월 11일(화) ~ 2020년 2월 27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등록 결원 발생시 학과의 예비순위 순으로 총원 발표함.</li> <li>모집 학과별 결원·미총원 발생시 해당 학과별 입학원서 접수순으로 추가 모집함.</li> </ul>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시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고지서 출력)」에서 인증 절차 후 개인별 확인 및 출력.

※ 지정된 등록 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미등록 처리되며, 추후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함.

### 3.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을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시행근거 및 지원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위탁교육)]

가. 자격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경력자로 현재 산업체 재직 중인 자**[산업체 근무 직종(분야)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나. 산업체의 인정범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9) 공적증명 소득증빙 제출 가능 산업체(4대 보험가입 산업체는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는 납세 증빙서류)

다. 산업체와 계약 체결

해당 산업체와 대학의 장은 사전('20.2.27까지)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라.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모두 및 공적증명서 발급일 기준(원서접수일)

- 1)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2)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4)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직업 군인은 장기복무확인서 1부)
- 5) 재직여부 증빙서류(아래참조 \*산업체: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 \*개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

① 산업체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로그인→개인 민원→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1부.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로그인→개인 민원→가입자 증명서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로그인→개인서비스→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출력)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위에 속하는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시, 전년도 소득증빙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가입 세금납부표기)을 받아 4대 보험가입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므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면 지원 불가**

- ② 1차 산업 종사자(영농인, 어업인 등) :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허가증명서 1부 및 수확물 공적출하증명서 1부.
  -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③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산업체 및 사업자 명이 표기된 소득관련 세금납부 공적증명서 각 1부.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함.

» 추가 제출서류 산업체[아래의 해당 산업체]

- 사설 학원(교습소) : 관할관청 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원서 및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는 본교 입시 홈페이지(<https://ipsi.ssc.ac.kr>)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 위 ② ~ ③에 속하는 1차산업종사자 및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가입 증명서로 증빙 할 수 없을시,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산업체 및 지원자명이 기재된 소득관련 세금납부 공적증명서 또는 수확물 출하·소득확인서 상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지원 불가**

#### 4. 전형 방법

가. 당해 재직 산업체장이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본교 총장과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한 서류 전형(무시험)으로 입학할 허가함.

나. 전형 우선순위

- 1) 단체 위탁계약으로 별도학급 편성 산업체 지원자
- 2) 현(現) 직장에서의 장기 근무 중인 자

5. 입학원서 접수 전형료 : 10,000원

#### 6.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분	기간 및 내용
입학포기 신청 기간	2020년 2월 28일(금) 16:00까지(온라인 신청)
온라인 환불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그인 → 환불 계좌정보 확인(작성) 저장 → 환불 입금(완료)</li> <li>① 본교 입시 홈페이지의 「입학포기 신청(등록금 환불)」 인증 절차 후 로그인</li> <li>② 원서 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 계좌정보 확인(작성) 후 입학포기 신청서 저장(저장 후 취소 불가)</li> <li>③ 등록금 환불 입금(입학포기 신청서의 금융기관 환불 계좌정보로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환불 입금 처리 신청서 작성 시간은 15:00까지 작성자에 한하여 당일 환불 입금</li> <li>- 15:00 이후 작성자는 다음날 환불 입금(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입금 불가)</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포기 신청 기간 후 포기자는 본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처리(자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퇴원서 제출은 입학식 이후부터 본교 학적과(방문)에서 작성(제출)이 가능함.</li> </ul> </li> <li>※ 학기 개시일 부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차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li> <li>② 학기 개시일 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li> <li>③ 학기 개시일 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li> <li>④ 학기 개시일 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반환하지 않음.</li> </ul> </li> </ul>

####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 기준과 관련된 제출 서류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결격·불합격 처리함.

나. 제출 서류는 발급 기관(장) 확인의 날인 또는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미확인시 불인정)

다. 입학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라.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마. 결격·불합격(미등록) 또는 입학허가 취소

- 1) 입학원서 또는 전형 자격 기준 서류 허위 제출자 및 불법 행위자
- 2) 자격 기준과 관련된 제출 서류가 미비 된 자 및 등록 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3) 입학 전 재직 중인 산업체를 퇴직한 자
- 4)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을 위한 재직사실 증빙서류를 지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원서 접수시 제출하였던 재직사실 증빙서류를 2020년 2월 28일(금)자로 재발급하여 **2020년 3월 3일(화)까지 입학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바. 본교는 장애학생 지원자에 대하여 입학할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음.

#### 8. 기타

가. 장학 제도

- 1)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매학기 수업료의 30%를 산업체위탁교육생 장학금으로 지급함.(2년제 4학기)
- 2) 일반 및 기타 장학금은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함.
- 3)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가능 함.

나. 학사관리

- 1) 산업체위탁교육생에 대한 신분 및 학사 관리는 본교의 학칙에 의함.
  - 2)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함.
  - 3) 산업체위탁교육생이 어떠한 사유로 휴학 또는 제적되어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당시의 산업체를 재직하지 않거나 해당 학과의 산업체위탁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4) **매년 3월, 9월 등록기간 중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 및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 증빙서류 모두 및 소득증빙을 위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 공적 납세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제적 처리됨)**
    -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他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본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9. 문의처

- 가. 입학관리과(본관 108호) : 031-350-2205  
 나. 2부 교학과(본관 102호) : 031-350-2225

10. 입학금 및 수업료(전년도 기준)

학과명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계	비고
자동차과	490,000원	2,939,000원	3,429,000원	수업료에서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전기과	490,000원	2,939,000원	3,429,000원	
산업경영과	490,000원	2,939,000원	3,429,000원	
호텔조리제과제빵과	490,000원	2,939,000원	3,429,000원	
호텔관광서비스과	490,000원	2,367,000원	2,857,000원	
사회복지과	490,000원	2,367,000원	2,857,000원	